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7.

발 의 자 : 김한규 · 남인순 · 이수진
김 윤 · 서미화 · 문대립
이연희 · 모경종 · 임미애
신정훈 · 전진숙 · 김남근
최혁진 · 송재봉 · 채현일
백혜련 · 장철민 · 이원택
문정복 · 이재정 · 박정현
박희승 · 양부남 · 정춘생
권향엽 · 진선미 · 백승아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·종합,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,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.

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·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

이 관함(안 제42조 등).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6. 성평등가족청소년부

제39조제1항 중 “사회보장·아동(영·유아 보육은 제외한다)·노인”을 “사회보장·노인”으로 한다.

제42조의 제목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청소년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”를 “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은 성평등 정책의”로, “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”을 “아동(영·유아 보육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

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.

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	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
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에 규정된 사무	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

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여성가족부	성평등가족청소년부
보건복지부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

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.

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개별 법률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, 그 밖의 행위와 그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의 행위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,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

성평등가족청소년부,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
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. 1. ~ 15. (생 략) <u>16. 여성가족부</u> 17. ~ 19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제26조(행정각부) ① ----- ----- 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<u>16. 성평등가족청소년부</u> 17. ~ 19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9조(보건복지부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생활보호 · 자활지원 · <u>사회보장 · 아동(영 · 유아 보</u> <u>육은 제외한다)</u> · 노인 · 장애인 · 보건위생 · 의정(醫政) 및 약 정(藥政)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다. ② · ③ (생 략)	제39조(보건복지부) ① ----- ----- <u>사</u> <u>회보장 · 노인</u> ----- ----- -----.
제42조(<u>여성가족부</u>) <u>여성가족부장</u> <u>관은 여성정책의</u> 기획 · 종합, <u>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,</u> 청소년 및 가족(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	제42조(<u>성평등가족청소년부</u>) <u>성평</u> <u>등가족청소년부장관은 성평등</u> <u>정책의</u> ----- <u>아동(영 ·</u> <u>유아 보육은 제외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.